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제 호

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

1. 운영주체:

2. 성명(대표자):

3. 관할 구역:

4. 사업장 소재지:

5. 사업장 규모: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